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(안 제2조)

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㎡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

나.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(안 제6조, 제8조 및 제9조)

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,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,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

다.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(안 제7조)

분양사업자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

라.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(안 제7조의2)

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

마.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(안 제7조의2)

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,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

3. 의견제출

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우편번호 : 30103
- 전자우편 : cgpro@korea.kr
- 팩스 : 044-201-345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-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(전화 044-201-3455, 팩스 044-201-566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문화재청공고제2019-206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「포천 초과리 오리나무」의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7월 5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포천 초과리 오리나무」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 예고

가. 대상문화재

- 지정종별 : 천연기념물
- 지정명칭 :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(抱川 初果里 五里木)

Alder Tree of Chogwa-ri, Pocheon

- 소재지 :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번지
- 지정구역 : 9,278.6㎡
- 지번별 면적조서 : 붙임 참조

나. 지정사유

-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, 근원둘레, 수관 폭,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음
-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존안례(尊雁禮)를 위하여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기러기, 하회탈, 나막신, 칠기의 목심(木心)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, 특히 초과리 오리나무는 단오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등 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큼

다. 문화재 관리단체 : 경기도 포천시청

2. 지정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3. 지정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4. 특기사항

-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(포천시 한탄강사업소)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새소식 「문화재 지정예고」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연락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: 전화 042-481-4988 / 팩스 042-481-49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ha.go.kr>

나. 지방자치단체

-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: 전화 031-538-2312 / 팩스 031-538-3090
- 주소 : (우11108)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,(대회산로), 포천시 한탄강사업소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pocheon.go.kr>

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

[붙임]

「포천 초과리 오리나무」 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

- 문화재구역 : 9,278.6㎡

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적(㎡) | | 소유자 | |
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지적 | 지정면적 | 주소 | 성명 |
| 계 | | | 27,725.6 | 9,278.6 | |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64 | 도 | 684.6 | 684.6 | | 농림부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62 | 답 | 1,838.3 | 1,190 |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| 서수원 |

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적(m ²) | | 소유자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지적 | 지정면적 | 주소 | 성명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63 | 답 | 4,235.7 | 2,502 |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| 서수원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69 | 답 | 5,193.1 | 2,430 |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641번길 88 | 임승길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70 | 답 | 4,518 | 963 | 경기도 포천시 신읍1길 6-18 | 정귀화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671 | 답 | 5,446.9 | 784 |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29번길 74-31(상패동) | 정혜순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147-2 | 답 | 5,683 | 599 |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618번길 41-1 | 임현권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554-5 | 구 | 13 | 13 | | 국토부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554-6 | 구 | 31 | 31 | | 국토부 |
|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| 554-7 | 구 | 82 | 82 | | 국토부 |

●산림청공고제2019-226호

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5일

산 립 청 장

“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”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8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모니터링 대상지 등(안 제1조~제4조)

-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, “산림복원”, “사후 모니터링”등의 용어를 정의
- 모니터링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함

나.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, 조사시기, 방법 등(안 제6조~제8조)

-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,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를 연 1회 동일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조사방법 등은 별표1로 정함

다. 모니터링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(안 제8조, 제9조)

-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별 평가표에 의해 8개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
-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, 2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함
-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은 기본적 사후관리, 보완 사후관리, 추가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함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6일까지 산림청장(참조 : 백두대간보전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